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성준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01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8월 12일
발 의 자: 김성준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동길, 김 경, 남창진,
박수빈, 박승진, 박유진,
박칠성, 성흠제, 송도호,
왕정순, 윤기섭, 이상욱,
이상훈, 이승미, 이영실,
이원형, 임규호, 전병주,
정준호, 최기찬 의원(20
명)

1. 제안이유

-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등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교통수단임.
-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부족인원이 크게 증가하여 차량을 제대로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승객 감소 및 버스 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.
- 이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노동환경 개선, 직무능력 향상 교육 등을 통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고충을 해소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구축하고자 함.
- 또한, 재정지원, 경영 및 서비스 평가, 시설개선 등 마을버스 지원과 관련된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성과관리 등을 강화해 대시민 서비스를 제고하고,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마을버스 시설 개선 사항에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(안 제5조제1항).
- 나. 재정지원, 경영 및 서비스 평가, 시설개선 등과 관련된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성과관리를 제고하고자 함(안 제8조).
- 다.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휴게공간 마련 등을 위한 근무 및 노동 환경 개선 근거를 마련함(안 제9조제1항제3호).
- 라.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(안 제9조제1항제4호).
- 마. 조례 체계상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함(안 제3조제4항, 안 제17조제5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 중 “범위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안전율”을 “안전과 편의율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제7조까지의 사항에 대한”을 “제7조까지, 제9조 및 제9조2의 사항에 대한 시행계획과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노동 환경 개선

4.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위한 직무능력향상 교육

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마을버스 사업자”를 “사업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운전자”를 “운수종사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시장은 재정지원 대상업체의 선정기준 및 재정지원 기준액(재정지원 대상업체의 운송원가에서 이윤을 제외한 금액)을 매년 초에 정하고, 예산의 <u>범위내</u>에서 운송수입금 등이 재정지원 기준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그 부족분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3조(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범위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안전 및 시설 개선) ① 시장은 마을버스 시설 개선을 통해 마을버스 이용자의 <u>안전</u>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개선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5조(안전 및 시설 개선) ① --- ----- ----- <u>안전과 편의</u>를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시의회 보고) 시장은 제3조부터 <u>제7조까지</u>의 사항에 대한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시의회 보고) ----- --- <u>제7조까지, 제9조 및 제9조 2의 사항에 대한 시행계획과</u> --- -----.</p>
<p>제9조(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) ① 시장 및 사업자는</p>	<p>제9조(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) ① -----</p>

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3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제17조(안전운행 방안) ① ~ ④ (생략)

⑤ 마을버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,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사업자 및 마을버스 운전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·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

3. 4. (생략)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노동 환경 개선

4.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직무능력향상 교육

5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안전운행 방안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사업자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운수종사자

3. 4.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제3호 (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노동 환경 개선)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
 - ※ 제9조제4호(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위한 직무능력향상 교육)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서울시 도시교통실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참고] 2024년도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조항	사업명	예산액(천원)
제9조제4호	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운영 및 교육 지원	1,849,382

※자료: 2024 서울시 예산서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 -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제3호 (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노동 환경 개선)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기준 및 사업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현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오희선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추 계 분 석 관 김지혜
☎ 02-2180-7953
e-mail : kjh0123@seoul.go.kr